

조기재취업수당 부지급 통지 공시송달 공고

고용보험법 제64조, 동법 시행령 제84조에 의거 조기재취업수당 부지급 통지서를 등기 발송하였으나, 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2024. 9. 9.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의정부지청장



- 1. 건 명: 조기재취업수당 부지급 통지서
- 2. 근 거: 행정절차법 제14조 및 동법 제15조, 고용보험법 제64조, 동법 시행령 제84조
-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성명	생년월일	주소	서류의 명칭	서류의 주요내용	공시송달 내용	송달불능사유
김O희	85.07.14.	경기도 의정부시 안골로 20 (이하 생략)	조기재취업수당 부지급 통지	노무제공자(플랫폼종사자)로 종사하기 위한 준비활동 없이 노무 개시하여 조기재취업수당 부지급 처분 결정 통보	동 서류를 2024년 9월 5일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송달 불가	폐문부재

- 4. 공고기간: 2024.09.09. ~ 2024.09.23.(15일간)
- 5. 기타사항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의정부지청 의정부고용센터 오소민(Tel. 031-828-0805)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